

3. 國土利用管理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63號 1994. 8. 17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 본문중 “도시지역에 대한 국토 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을 “도시지역 은”으로 하고, 동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호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2. 인구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1천인 이상으로서 취업인구의 30퍼센트이상 이 제2차산업 또는 제3차산업에 종사 하는 지역이나 기존 도시지역의 주변에 위치하여 서로 연계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제2조의4 본문중 “준도시지역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을 “준도시 지역은”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15만제곱미터미만의 개별공장등 산업시설의 입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도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할 수 있다.

(1) 국토이용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아 공장등 산업시설용지로 조성된 토지의 경우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신고된 공장(1993. 12. 31일 이전에 설립신고된 공장에 한한다)을 기존공장부지의 50퍼센트이하이고 1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증설하는 경우

제2조의14의 제목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신청)”을 “(토지이용계획의 확인 또는 열람신청)”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을 “확인을 받거나 열람을 하고자 하는 자는”으로, “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를 “그 확인 또는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본문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거나 열람하고자 하

는 자”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 확인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의하며, 토지이용계획열람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 3 서식에 의한다.

4. 도시이용계획에 관한 열람 : 100원
제5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토지현황사진의 보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1. 토지를 농업·축산업·어업 또는 임업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아

니하는 경우

2. 기존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현재의 용도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제7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개발·이용계획중 착수일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심의등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중 “토지등”을 “토지”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 본문중 “서울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및 제3호 중 “규제구역”을 각각 “허가구역”으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의2 서식]·[별지 제8호 서식]·[별지 제10호 서식]·[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생략>

부 칙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발·이용계획상의 착수일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기존공장의 증설을 위한 입안기준을 완화하고 준농립지역안에서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토지의 착수의무기간을 연장하는등 그 동안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기존 공장에 대하여는 공장부지면적의 50페센트이하 이고 15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하여 증설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계획입안기준을 완화함(제2조의4).
- 나. 종전에는 준농립지역안에서는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의 설치는 모두 제한하고 있었으나, 국가등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등 한시적인 부대시설은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다. 종전에는 토지거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토지 모두에 대하여 시·군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하여 사진을 촬영·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형질변경등 개발행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진을 촬영·보관하지 아니하도록 함(제7조의2).
- 라. 종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취득토지에 대한 개발·이용의 착수일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1년이내로 연장하되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및 심의기간은 당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함(제7조의3).

(건설부 제공)